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유형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주택시장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형 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형 주택 :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소형 주택이 아닌”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소형 주택이 아닌”을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형”을 각각 “아파트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7항에 따른”을 “제27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 ----- ----- ----- -----.
1. <u>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u>	1. <u>아파트형 주택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u>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삭 제>
나.·다. (생략)	가.·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2. 단지형 연립주택: <u>소형 주택이 아닌</u>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 <u>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u> ----- ----- ----- -----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u>소형 주택이 아닌</u> 다세대주택. 다만,	3. ----- <u>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u> -----.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② -----

-----.

-----.

1. 도시형 생활주택-----

2. -----

----- 아파트형 -----

③ -----

--- 아파트형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9